

## 전문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(감경) 사항 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.

2026년 4월 9일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# 1. 대상업체

업체명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영업소 소재지	처분근거	처분내용
주식회사디몰드	실내건축공사업 인천서구2022-나-09호	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26 1층 101호 (청라동)	건설업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	영업정지 4개월 (감경 2개월)

#### 2. 기타사항

- 가. 본 행정처분 사항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 또는 온라인(<http://incheon.simpan.go.kr>)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(032-560-44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